## 공직선거법위반

[서울중앙지방법원 2010. 12. 24. 2010고합1048]



## 【전문】

【피고인】 피고인 1외 4인

【검사】이인걸

【변 호 인】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윤경 외 8인

## 【주문】

]

- 1. 피고인 1을 벌금 7,000,000원에, 피고인 2를 징역 6월에, 피고인 4를 벌금 2,000,000원에 각 처한다.
- 2. 피고인 1, 피고인 4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,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.
- 3. 다만, 피고인 2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
- 4. 이 사건 공소사실 중 ① 피고인 1에 대한 각 기부행위로 인한 각 공직선거법위반의 점, ② 피고인 2에 대한 2009. 11. 25.자(2009. 11. 23.자 기부행위 포함), 2009. 12. 8.자, 2009. 12. 10.자 및 2010. 1. 7.자 각 제3자 기부행위로 인한 , 2009. 11. 25.자, 2009. 12. 8.자, 2009. 12. 10.자, 2010. 1. 8.자 및 2010. 1. 9.자 각 사전선거운동 및 공무원의 선거운동금지위반으로 인한 각 공직선거법위반의 점, ③ 피고인 4에 대한 2009. 11. 25.자 사전선거운동 및 지방공단 상 근임원의 선거운동금지위반으로 인한 각 공직선거법위반의 점, ④ 피고인 3, 피고인 5는 각 무죄.

## [이유]

]

[이유]

1

[이유]

]

[이유]

]

[이유]

1

[이유]

1

[이유]

1